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의결 제2008-31-130호

사 건 명 SK브로드밴드(주)[舊하나로텔레콤(주)]의 불법스팸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사건번호 200710조사036

피 심 인 SK브로드밴드(주)[舊하나로텔레콤(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7 아시아원빌딩
대표이사 조 신

주 문

1. 피심인은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
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지연조치 또는 미조치
하는 행위,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이용
약관과 다르게 승낙을 유보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신규 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스팸 개요

< 스팸 및 불법스팸의 정의 >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한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①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신자의 전화·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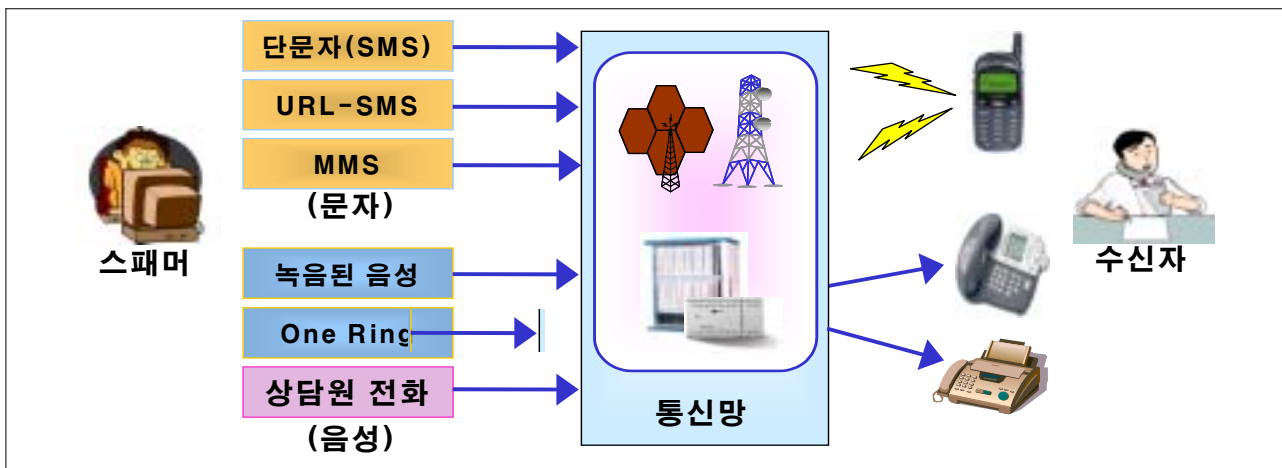
1. 재화 및 용역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경우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의 경우

< 전화를 이용한 스팸 전송의 체계 및 유형 >

스팸 전송자는 휴대전화단말기나 SMS 발송 전용모뎀(슈터기) 및 ARS 장비 등을 이용하여 문자 또는 음성 형태 등의 스팸을 무작위로 전송하고 있다.

스팸은 개인사업자 등 광고주 스스로 전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전문 스팸머나 기업형 전송 대행업자를 통하여 일시에 대량으로 보내는 추세이다.

< 스팸 전송 체계 >



전화를 이용한 스팸은 주로 음성, 녹음, 원링, SMS(*1), URL(*2) 등의 유형으로 전송되고 있다.

< 스팸 전송 유형 >

구 분	내 용	비 고
음 성	일방적으로 직접 전화를 연결하여 상담 등을 실시	
녹 음	이동전화 등 전화단말기에 음성 녹음을 저장하여 이용자가 녹음을 청취하도록 유도	
원링(One Ring)	전화벨이 한 번 정도 울리면 통화를 단절하고, 이동전화 등 전화단말기에 전화번호를 남김으로써 통화를 유도	
SMS	이동전화 등 전화단말기에 광고 내용 및 전화번호를 남김으로써 통화를 유도	*1
URL	주로 이동전화 단말기에 인터넷사이트의 주소를 표시하고, 이용자가 이를 누르면 바로 인터넷사이트에 접속 가능	*2

과거에는 주로 전화정보서비스번호(060)를 이용하여 스팸을 전송하였으나, 최근에는 일반전화번호를 이용해서 전송하여 이용자가 의심 없이 회신하도록 유도하는 등 광고방법이나 광고내용에 있어서 보다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 스팸 유형의 변화 >

구 분	과 거	최 근
전송번호	전화정보서비스(060)	일반전화, 이동전화, 전국대표번호, 평생번호
통화유도	회신번호 남김	착신전환, 통화버튼 입력 후 상담원 연결
광고방법	문자광고	음성광고(ARS, 직접 통화), One Ring
광고내용	성인채팅	대출상담, 대리운전 등
전송망	전화계망	무선인터넷망

나.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 관련 법령 규정 >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역무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4(정보전송 의무 제공 등의 제한)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의무의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이용계약을 통하여 당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불법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의무 제공의 거부에 관한 사항을 그 의무의 이용자와 체결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계약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2조(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근거하여 불법스팸의 신고를 받고 있다.

동 법의 취지를 반영한 舊 정보통신부의 스팸방지 가이드라인('06. 3.)에 따라 신고 받은 전화번호별로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해지 등 이용제한을 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을 요청받은 경우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보호진흥원에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한국정보보호진흥원) ①정부는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한 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보호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8.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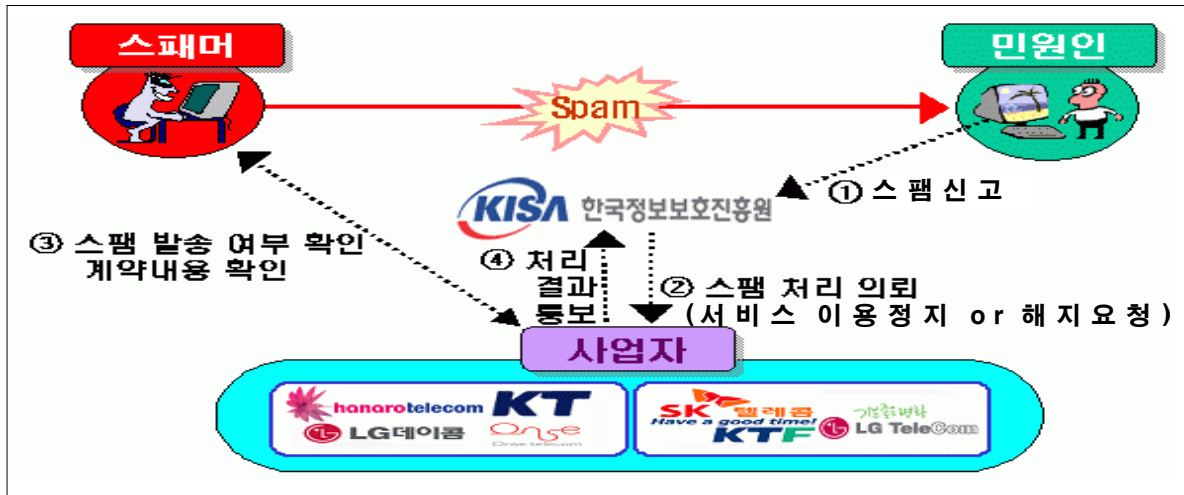
8의2. 불법전송광고와 관련된 고충의 상담·처리

※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② 불법스팸 전송자 이용제한 절차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건 또는 Trap등을 이용하여 자체 적발한 건 중 법 위반사실 및 그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한 건을 일정기준에 따라 선별
- (2) 정보통신부 장관(한국정보보호진흥원장에 위임)이 선별된 건에 대해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스팸 전송자 서비스 이용제한을 요청
- (3) 이용제한을 요청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내 필요조치 후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조치결과 통보

< 이용제한 절차 >



< 피심인의 이용약관 규정 >

방송통신위원회(舊 정보통신부)는 동 가이드라인에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 및 해지의 요건 등에 관한 스팸방지 이용약관 규정을 예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 이용약관 예시

나.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마’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이용자 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다만, 동 자격 상실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로 합니다.

라. 이용의 정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서비스 이용을 정지(전체 서비스 또는 일부 서비스)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 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 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스팸 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원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 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등

마. 계약의 해지

회사는 이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이용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 당해 연도에 2회 이상 이용정지를 당한 경우

이에 따라, 피심인의 전기통신서비스이용기본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은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정지나 해지를 요청받은 경우 전체 또는 일부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서비스를 해지 당한 자가 해지 후 1년 이내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입 승낙을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 피심인[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 기본약관

제6조(승낙의 유보)

①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는 이용신청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낙을 유보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2.제20조②항에 의해 서비스이용이 중단된 경우. 단 서비스 이용중단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예외임

제20조(해약)

②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약할 수 있습니다.

7.제32조①항 관련, 서비스제공중단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불법스팸을 전송하여 정보통신부·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당해연도에 2회 이상 서비스 제공중단을 당한 경우

제32조(서비스제공중단)

①SK브로드밴드(舊하나로텔레콤)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단, 4호내지 7호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단합니다.

4.정통부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불법 스팸 전송 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5.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6.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되어 스팸을 전송한 경우

7.해당 광고를 수신한 자가 수신거부를 요청하였으나 지속 재전송한 경우

다. 피심인의 전화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현황

< 스팸에 이용되는 피심인의 전화서비스 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의해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시내·시외·국제전화역무, 인터넷접속역무 등을 제공하고 있다.

피심인의 일부 전화서비스 이용자는 일반전화번호나 개인번호 서비스·전국대표번호서비스 등과 같은 전화부가서비스 번호를 이용해 불법스팸을 전송하고 있다.

개인번호서비스는 평생 변경되지 않는 번호(0506-YYY-YYYY, Y:0~9)를 부여하여 이 번호로 걸려 오는 전화를 자신이 지정한 착신처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이며

전국대표번호서비스(1566/1600-YYYY, Y:0~9)는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를 걸면 발신자의 국번호에 따라 사전에 지정된 전화번호로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이다.

피심인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일반전화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 매출액 및 가입자 수는 아래와 같다.

< 스팸 전송 관련 서비스의 매출액 등 현황 >

(단위 : 억원, 회선수)

구 분	일반전화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대표번호서비스	합 계
매출액	4,087	41	225	4,353
가입자	1,905,621	36,050	13,098	1,954,769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2007년도말 기준)

< 불법스팸전송자에 대한 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 현황 >

피심인이 조사대상 기간인 2006. 8. 1.~2007. 5. 31. 동안 보호진흥원 으로부터 불법 스팸 전송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정지나 해지 등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이용제한 요청받은 현황 >

구 분	일반전화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대표번호서비스	합 계
이용정지	38건	1건	11건	50건
해 지	2,825건	77건	329건	3,231건
계	2,863건	78건	340건	3,281건

※ 출처 : 보호진흥원 제출자료

2.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시장조사과에서는 2008. 4. 28.~ 5. 6. 기간 동안 피인 지인을 방문하여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정지 및 해지 요청을 받은 이용자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 여부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해지를 당한 이용자가 1년 이내에 전화 서비스를 청약한 경우 이에 대한 피심인의 승낙 유보 여부를 전산자료를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 ①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이용제한 조치에 대하여 >

보호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심인이 2006. 8. 1.~2007. 5. 31. 기간 동안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정지 및 해지를 요청 받고 이에 대해 조치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보호진흥원 제출 피심인 조치 내역 >

구 분	기처리	즉시	3일 이내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초과	답변 오류	미조치	합 계
이용정지	1건	47건	1건	-	-	-	-	1건	-	50건
해 지	46건	2,990건	54건	14건	1건	1건	-	90건	35건	3,231건
합 계	47건	3,037건	55건	14건	1건	1건	-	91건	35건	3,281건

※ 즉시 : 당일 또는 1일 이내

기처리 : 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 전에 이미 처리가 완료된 경우(예 : 요청일자-'07.5.15, 처리일자-'07.5.10.)

답변오류 : 현장조사 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날을 처리일자로 기재한 경우 등(예 : 조사일자 : '08.4.22., 처리일자-'08.8.10.)

미조치 : 처리일자가 누락된 경우

보호진흥원의 이용제한 요청에 대해 피심인이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거나 4일 이상 지연 또는 미조치하였다고 답변한 건 및 답변오류건 총 189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결과 확인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조사 결과 >

구 분	기처리	즉시	3일 이내	7일 이내	15일 이내	30일 이내	30일 초과	미조치	합 계
이용정지	1건	1건	-	-	-	-	-	-	2건
해 지	43건	113건	2건	13건	1건	2건	6건	7건	187건
합 계	44건	114건	2건	13건	1건	2건	6건	7건	189건

※ 금요일이나 연휴 직전 일에 이용제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심인이 조치하는데 최소한 3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조치 지연 건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4일 이상 지연한 건으로 한정함

미조치 7건은 피심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사한 189건 중 피심인의 귀책사유로 4일 이상 지연 조치한 것은 22건으로서 비율은 11.64%이다.

< ② 계약자격 상실자에 대한 신규 서비스 승낙 유보 여부 >

2006. 8. 1.~2007. 5. 31. 기간 동안 이용자의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서비스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 3,231회선 중 명의가 파악된 3,224회선의 명의자는 총 145명이며, 명의자별로 해지를 요청받은 회선수 현황은 아래와 같다.

< 명의자별 해지 요청 회선수 >

명의자 구분	100회선 이상	31~99 회선	10~30 회선	2~9 회선	기 타	합 계
개인명의	9명	8명	27명	58명	23명	125명
법인명의	1명	2명	5명	5명	7명	20명
합 계	10명	10명	32명	63명	30명	145명

명의가 파악된 145명 중 10회선 이상 해지 요청을 받은 52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 서비스가 해지된 이후 1년 이내에 새로운 전화번호를 부여하였는지를 조사한 결과

계약자 전○○의 경우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하여 최초 2007년 1월 29일 1566-xxxx번에 대해 서비스가 해지되었으나, 피심인은 2007년 2월 14일 02-6385-xxxx번 등 319 회선을 제공하는 등 총 32명에게 2,174회선을 신규로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법인명의인 계약자 유한회사 런○○은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하여 최초 2007년 3월 8일 02-6295-xxxx번에 대해 서비스가 해지 되었으나, 피심인은 2007년 3월 8일 02-6254-xxxx번 등 194회선을 제공 하는 등 총 3개 법인에게 207회선을 신규로 부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3.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보호진흥원으로부터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 정지나 해지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화번호에 대해 상당 기간 이용제한 조치를 지연 또는 미조치하거나,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1년 이내에 신규 전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행위는

불법스팸 전송자들에게 계속하여 스팸을 전송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의 전기통신 이용자들에게 스팸 수신으로 인한 불편을 주고

스팸 삭제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과다한 스팸으로 인하여 필요한 정보의 수신을 방해하는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

※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해지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스팸 전송을 이유로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해지된 개인 고객의 정보는 파기하여야 함

- 따라서, 해지된 개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심인이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계약자격을 상실한 개인에 대해 신규 서비스의 승낙을 유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이용자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2조제1항·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또는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 불법스팸 전송 방지를 위한 해지고객 개인정보 보유방안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불법스팸 전송으로 인해 서비스가 해지된 개인의 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함으로써 당해 개인이 다시 서비스를 청약할 경우 승낙 유보가 가능하도록

- 이용약관에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동 정보를 해지 후 1년간 보관할 수 있음을 규정하도록 '08. 9. 스팸방지가이드라인 개정

따라서 피심인의 이용제한 조치의 지연 및 미조치 행위와 법인 명의의 계약자격 상실자에 대해 신규 서비스의 승낙을 유보하지 않은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

-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4. 시정조치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6호에 의거, 불법스팸으로 인하여 보호진흥원으로부터 이용정지 또는 해지 요청을 받은 전화번호에 대해 지연조치 또는 미조치하는 행위, 불법스팸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당한 법인에게 이용약관과 다르게 승낙을 유보하지 않고 1년 이내에 신규 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토록 한다.

나.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 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제1항제9호에 의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이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때,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6.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법 제37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8. 9. 25.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위 원

이 경 자 (인)

위 원

이 병 기 (인)

위 원

형 태 근 (인)